

교회사에서 본 장로제도

이상규(고신대학교 신학과)

요약

교회에도 정치제도가 있는데, 감독제(監督制), 회중제(會衆制), 장로제(長老制)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교직제도를 부인하는 파라 처치(para-church)가 있다. 천주교회의 교황제(敎皇制)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3가지 제도로 이해한다. 장로교회란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는 교회’를 말하는데, 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장로와 장로사이,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교회에서의 계층적 혹은 계급적 구조를 반대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특징이다.

한국교회는 70% 이상이 장로교회이지만 이런 장로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역사적으로 장로교회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되, 직분관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기술하였다. 직분관은 교회관을 결정하는 기초인데, 직분과의 오해 혹은 곡해가 교회 제도를 변화시키고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신약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감독)와 집사 뿐이었다. 이를 2직분론이라고 말한다. 이 입장은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라는 점에 기초한다. 그러나 2세가 중엽 이후 ‘장로’(πρεσβύτερος)와 감독(ἐπίσκοπος)을 별개 직으로 이해하는 3직분론이 대두 되면서 교회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사례가 안디옥의 이나티우스의 문서에서 대두된다. 3직분론은 감독과 장로를 별개의 직분으로 계층화한 것이 교회구조를 계급구조로 변질시키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점차 서서히 감독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4세기 이후 이런 경향이 심화되어, 직분은 권력화 되고 계층화(hierarchical system)되어 감독 대주교 총대주교 추기경 교황 등과 같은 인간 중심의 계급구조로 발전했다.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장로와 집사는 감독 휘하의 보조자로 전락했고, 점차 그 직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 결과 중세 하에서 장로와 집사는 기능이나 역할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16세기 개혁자들 특히 칼빈에 의해 장로교정치제도가 회복되면서 교회관에도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된다. 칼빈은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규정’(Ecclesiastical Ordinances of Church of Geneva)에서 장로교 제도를 회복했는데, 그의 교회론은 마틴 부서(Martin Bucer)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웨스트민스터회의(1643-1647)에서도 교회정치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 회의에서도 장로교 제도가 잘 석명되었다.

그렇다면 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19세기 미국교회에서는 장로직 이해와 관련하여 큰 논쟁이 제기되었다. 그것이 남장로교의 소론웰(James H. Thornwell)과 북장로교의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논쟁이었다. 그 이후 장로직에 대하여 3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왔다. 이 직분 이해를 통해 한국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재 점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면서

모든 조직체에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치리제도가 있듯이 교회에도 정치제도가 있는데, 흔히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감독제(監督制), 회중제(會衆制), 장로제(長老制)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교직제도를 부인하는 파라 처치(para-church)가 있다. 천주교회의 교황제(敎皇制)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간편하게 구분하여 교

항제도 감독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독제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따르는 정치형태로서 상회와 하회의 구분이 뚜렷하고, 교회 직분자 간의 계급적 차이를 두어 지역교회 간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정치형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종의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회중제는 회중교회나 침례교회가 따르는 제도로서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제도이다. 회중제는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즉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 예산집행이나 권징의 자율적 실시를 강조한다. 개 교회나 목회자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계층구조를 반대한다. 그런데 회중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연합을 강조하다보면 교회구조가 계급화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노회나 총회와 같은 형식의 치리회(治理會)를 반대하고, 개 교회주의를 지향한다.

반면에 장로제(presbyterianism)는 장로교회의 정치형태로서,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장로와 장로사이,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계층적 혹은 계급적 구조를 반대한다. 동시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는 감독제와 같이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두지 않고, 회중제와 같이 회중의 결정을 절대시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회중이 선출한 장로(지금의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대의제(代議制)라고 불리기도 한다. 장로교회는 개 교회의 독립성, 평등성,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을 강조한다.¹⁾ 감독제도 외의 치리제도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 이 점은 감독제도의 교권적, 계층적 제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해 준다.

한국교회의 70% 정도가 장로교회로서 장로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장로교회 제도의 기원이나 의의, 혹은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로교 제도 혹은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저들이 있으나 교회의 직분이해와 관련하여 장로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되지 못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장로제도, 혹은 장로교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부침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검토하고, 장로들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장로’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교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사역장로’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로직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대해 부기하였다.

1. 신약 교회에서의 장로

1) 2직분론: 집사와 장로(감독)

장로교회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장로에 의해 다스러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로교회는 이 제도가 사도시대부터 있어왔던 정치제도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장로제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 가장 사도적인 제도,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말한다.²⁾ 그러나 신약성경에

1)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이하 *Inst.*로 약칭한다), IV.2.6.

2) 장로교의 원리, 제도, 역사에 대한 평이한 안내서로는 Thomas Withevow(이국진역), 『장로교회의 성경적 근거』(*The Apostolic Church Which is it?*, 아가페 문화사, 1991), 자넷 맥그레고(최은수 역), 『장로교정치제도 형성사』(솔로몬, 1997), 윌트 링글(이종진 역), 『세계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 이야기』(예루살렘, 1992), 배광식, 『장로교정치제도 어떻게 형성되었나』(토라, 2006), 오덕교, 『장로교회사』(합신대학원대학교, 2005), 황정욱, 『장로교회사』(한신대학 출판부, 2006), 홍치모, 『영미장로교회사』(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등이 있다.

서 어떤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지 혹은 교회는 어떤 정치체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체화된 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집사’ 외에도 ‘장로’라는 직분과 ‘감독’이란 직분이 나온다. ‘장로’(πρεσβύτερος)라는 말은 신약성경에만 66회 사용되었는데 영어로는 elder 혹은 presbyter로 번역되었다. 물론 이 66회의 단어가 다 직분으로써 장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분으로써 장로를 의미하는 경우는 19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³⁾ 반면에 감독(ἐπίσκοπος)⁴⁾이란 말은 신약성경에 오직 5번만 사용되었다(행20:28, 빌1:1, 딤후3:2, 딤후1:7, 벧전2:25). 이를 영어로는 bishop, overseer, supervisor 등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두 용어는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⁵⁾ 이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이다. 흔히 ‘밀레도 강화’라고 불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πρεσβυτέρους)에게 설교하는 중에 (행20:17) 동일한 대상을 ‘감독자들’(행20:28, ἐπίσκοπους)로 호칭하였다. 말하자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란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경우가 디도서 1장에도 있다. 바울은 각 성(城)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명하면서(딤후1:5)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중에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감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곳에서도 감독과 장로라는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동일한 대상을 감독으로 혹은 장로로 호칭함으로써 ‘장로’와 ‘감독’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디도서 1장 5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것은 장로는 감독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⁶⁾

이와 동일한 예가 빌립보서 1장 1절이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인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사에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언급하고 있지만 ‘장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것은 ‘장로’가 ‘감독’과 동의어였기에 ‘장로’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이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⁷⁾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외의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으로 간주되는 『클레멘트서신』(The Epistles of Clement of Rome)⁸⁾에서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3) 조석민, “신약성서의 장로직분,” 『교회 직제론』 (예영, 2012), 56-7.

4) 신약에서 ἐπίσκοπος는 ποιμήν과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목사로 번역했다(엡4:11). ποιμήν은 신약에서 18회 사용되었다(마9:36, 25:32, 26:31, 막6:34, 14:27, 눅2:8, 15, 18, 20, 요10:2, 11(2회), 12, 14, 16, 엡4:11, 히13:20, 벧전2:25).

5) 신약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가 동직 이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I. H. Marshall,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99), 180-181.

6) 참고, *Inst.*, IV.3.8.

7) 칼빈도 성경에서 사용된 episcopus, presbyter, pastor, minister 등을 동의어로 보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이라고 고별없이 부른 것은 이 용어들을 혼용한 성경적 용법을 따른 것이다.” *Inst.*, IV.3.8. 칼빈 또한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라는 점을 딤후1:7,7, 빌1:1, 행20장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Inst.*, IV.3.8.

접이다.

이런 근거에서 필립 샤프(Phillip Schaff, 1819-1893)나⁹⁾ 라이트푸트(Joseph B. Lightfoot, 1828-1889)는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로 보았다.¹⁰⁾ ‘장로’와 ‘감독’의 차이가 있다면, ‘장로’(長老)는 연령적 측면 혹은 위엄에 강조를 둔 표현이라면, ‘감독’(監督)은 직분의 임무 혹은 역할에 강조를 둔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신약교회의 직분은 오직 두 가지, 곧 집사와 장로(감독)로 구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2직분론(二職分論)이라고 말한다.

2) 장로의 자격과 역할

신약성경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딤후3:1-7, 딤후1:5-9), 장로의 사역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장로의 자격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장로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장로의 역할을 암시하는 성경 근거로 디모데후서 5:17절과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3:2절을 들 수 있다. 디모데전서 5: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에서는 장로의 지도력 곧 치리적 기능을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2절에서는 “가르치기를 잘하며”에서는 장로의 교육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본문에서 볼 때 장로의 사역은 두 가지, 곧 다스리는 치리(治理)의 기능과 가르치는 교육이 기능을 암시하고 있다. 장로는 바르게(καλως) 다스리는 지도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치는 직분임을 보여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교회의 장로는 가르치는 것을 굳게 지켜야하고, 그릇 가르치는 이들을 바로잡고 논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딤후1:9). 디모데전서 3:2에 사용된 ‘가르치기를 잘하며’(διδακτικός)는 ‘가르칠 능력이 있는’(able to teach)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가르칠 능력을 장로의 자격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가르침이 장로의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차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딤후4:2)고 권면했을 것이다.

2. 2세기 이후의 변화

1) 삼직분론(감독 장로 집사)의 대두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로 이해되어 동일한 직분의 두 표현으로 여겨져 왔으나 2세기 중

8) 클레멘트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 고전 헬라어로 기록된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The Letter of the Church of Rome to the Church of Corinth*)인데, 이것을 클레멘트 서신이라고 부른다. 이 서신은 신약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이 편지는 AD 96년경 고린도교회에서 장로와 교인 사이에 분규가 생겼을 때 보낸 서신으로서 전6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세기 당시의 우편 전달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S. R. Llewelyn, *New Documents Illustrating Early Christianity* [Vol. 7 (The Ancient History Documentary Research Centre, Macquarie University, 1994), 1-57을 참고할 것. 이 클레멘트 서신은 Claudius Ephebus, Valerius Vito 그리고 Fortunatus에 의해 전달되었다(1 Clem. 63.3, 65.1).

9) P. Schaff(이길상 역), 『사도적 기독교』(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394. 샤프는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장로는 회당에서 차용인 용어인 반면에 감독은 헬라사회 공동체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장로가 위엄을 의미한다면 감독은 임무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았다.

10) J. B. Lightfoot, *St.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Macmillan, 1881), 95-99, 181-269. 물론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로 목회서신에서 감독은 항상 단수이지만, 장로는 항상 복수로 사용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딤후5:19에서는 장로가 단수로 표기되었다.

업 이후 변화를 겪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성경에서는 두 직분 곧 장로(혹은 감독)와 집사를 언급하고 있어 ‘2직분론’으로 인식되어 왔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서신(*The Epistles of Clement of Rome*, c. 96)이나 *Didache* (c. 100)에서 ‘장로’와 ‘감독’은 상호교차적으로 사용되었고, 2세기 말까지도 이런 용례가 사라지지 않았다.¹¹⁾

그런데 2세기 중반 이후 장로와 감독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벌써 익나티우스 때부터 이 용어가 구분되어 별개의 두 직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익나티우스는 110년 경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건한 감독 다마스(Damas), 여러분의 합당한 장로들인 바수스(Bassus)와 오폴로니오스(Apollonius), 그리고 나의 동료봉사자인 조티온(Zotion) 집사”¹²⁾ 등을 언급하고 있어 감독과 장로가 별개의 직분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랄레스인들에게』와 『서머나인들에게』에서도 동일한 직분 이해가 나타난다.¹³⁾

익나티우스의 작품에서 감독과 장로가 동의어가 아니라 감독직의 부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에 가톨릭교회¹⁴⁾가 있는 것처럼, 감독이 있는 곳에 공동체도 있다. 감독이 없이는 세레나 성찬(ἀγανη)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¹⁵⁾ 말하자면 감독을 장로와 집사보다 우위에 둬으로써 은사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수직적 구조의 직분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익나티우스는 감독과 장로, 집사 등 삼중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기에 와서 감독(주교)는 장로회의 보좌를 받는 회중의 우두머리로 간주되었고, 후에는 사도들의 계승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감독은 장로 중에서 선임된 자로 변화가 나타났다.¹⁶⁾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2세기 중엽의 속사도 교부들은 ‘감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점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익나티우스의 글 속에 현저히 나타나는데, 120년경부터 감독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조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⁷⁾ 150년 이후부터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예컨대 이레니우스는 먼저 장로가 되었다가 178년 폰티누스의 뒤를 이어 리용(Lyon)의 감독이 된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은 첫 2세기 교회사를 취급하는 *Historical Theology* 제1권 7장에서 계층화 된 성직계급(Prelacy)의 출현을 은혜의 교리에 대한 모호하고도 잘못된 견해와 덕(Virtue)과 성만찬의 효과에 대한 오도되고도 과장된 개념의 대두와 함께 교회관의 변질을 보여주는 징후로 지적한 바 있다.¹⁸⁾ 기독교회가 감독제도를 채용하게 된 것은 교회 내적인 이유도 없지 않았지만 당시 정치적인 여건, 곧 공화정치가 아닌 왕정(王政)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보지 않고 별개의 직분으로 이해하여 교회에는 집사,

11) P. Schaff, 395.

12) J. B. 라이트푸트, 『속사도교부들』(CLC, 1994), 128, 이냐시오스, 『일곱편지』(분도출판사, 2000), 50.

13) 조병하, “초대교회 직제발전에 대한 연구,” 『교회직제론』, 83-84.

14) 익나티우스는 가톨릭교회(ἡ 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라는 용어를 사용한 첫 인물로 알려져 있다.

15) 『서머나인들에게』 8.2. 조병하, 83-84.

16) P. Schaff, 395. 칼빈도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칼빈은 고대교회의 정치형태에 대해 말하면서, “각 도시마다 특정한 한 구역이 배당되어 거기서 장로들이 선출되고 그 지역은 그 교회의 몸이 속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 조직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각 장로회의 마다 한 감독의 치리를 받았다. 감독은 그 위엄에 있어서 다른 장로들 보다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의 회의에 복속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Inst.* IV.3.8.

17) 김영재, “장로교회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학정론』 10권 2호(1992, 12), 356.

18) William Cunningham, *Historical Theology*, Vol. 1, 202.

19) 김영재, 356.

장로, 감독의 3 직분이 있었다는 주장을 ‘삼직분론’(三職分論)이라고 말한다. 여러 장로들 중에서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감독’으로 부르면서,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고 계급화 시켰다. 이런 입장이 3직분론자들의 입장이다. 감독과 장로를 동일 직분으로 보지 않고 이를 계층화한 것이 교회구조를 계급구조로 변질시키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2세기를 접어들면서 서서히 감독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섬김의 직분이 인간중심의 계급 구조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2) 교회의 계급구조와 장로직의 소멸

처음에는 한 사람의 감독과 여러 장로 혹은 집사들이 한 교회에서 사역했다. 그러나 점차 감독은 한 도시에서 여러 교회를 관장하는 직분으로 발전했다. 감독은 2세기 중엽(140-180) 영지주의나 마르키온주의와 같은 이단에 대항하면서 사도적 권위와 전승을 주장했다.²⁰⁾ 그 이후 감독의 권한은 더 강화되었고, 감독들 사이에서도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3세기 이후 감독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어, 감독 대주교 총대주교 추기경 교황 등의 계급구조로 발전했다.

콘스탄틴에 의한 기독교 공인과 국교화가 이루어지는 4세기를 접어들면서 이런 계층적인 교회 구조, 즉 감독제는 심화되었고, 이런 발전은 ‘교황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니케아회의(325)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 감독을 동일시하여 다른 지역 감독들보다 높은 대감독(Patriarchs)의 칭호를 수여하도록 결정하였고, 콘스탄티노플 회의(381)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에게도, 칼세돈 회의(451)는 예루살렘 감독에게도 대감독의 칭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5세기 중엽 이후 전기한 5개 지역에 ‘대감독’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를 제외한 4개 도시 대감독들이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의 영향 하에 있었음으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교회의 주도권은 지니게 된다. 직분은 권력화 되고 계층화(hierarchical system)되었다.

170년경부터 베드로는 로마의 첫 감독이었다는 주장이 나타났고, 이레니우스, 키프ريان 등은 로마감독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4세기 말 로마의 감독 다마스 1세(Damasus I, 366-384)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직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것임을 공포하였고, 제롬(Jerome)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토록 지시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로마감독의 권위를 이 번역에 반영토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404년 라틴어 성경 Vulgate역이 간행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로마감독의 권위가 크게 부상하여, 476년 서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교회가 국가권위를 대신하게 되었고 따라서 로마 감독은 세속까지도 통치하는 교황(Caesar Papacy)이 되었다. 그 후 그레고리 1세 때(590)는 로마교회가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왕권(imperium)에 대한 사제권(sacerdotium)의 우위를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계층구조적인 교황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순수한 ‘말씀의 봉사자’가 ‘사제’가 되어 성례전 수여 등과 같은 소위 은혜의 수여자가 된 것이다. 이 사제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명분으로 교권주의가 계급주의(Hierarchism) 곧 교황주의(Papism)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장로와 집사는 감독 휘하의 보조자로 전락했고, 점차 그 직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 결과 중세 하에서 장로와 집사는 기능이니 역할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

20) Adolf MAtin Ritter(조병하 역), 『고대그리스도교의 역사』(기독교문사, 2003), 34-53.

다. 물론 중세 하에서도 교회쇄신과 장로교적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피터 왈도(Peter Waldo, d. 1217)나 위틀리프(Wycliff, c. 1330-1384)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중세의 교황제(감독제) 하에서 사라진 장로제도를 성경적인 제도로 간주하여 이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 왔는데, 이들이 바로 개혁자들, 특히 칼빈이었다.

3. 개혁자들의 교회관과 장로직

1) 칼빈과 장로교 제도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교회관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교회관의 변화는 직분관의 변화를 수반했다. 이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 루터였다. 루터는 종래의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을 거부했다. 가톨릭교회는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루터는 교회를 단순히 ‘믿는자들의 공동체’, 곧 ‘성도의 모임’(communio sactorum)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직자나 감독들에 의해 성립되거나 유지되지 않고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 하기온)로 바르게 서게 된 것이다. 목사는 계층적 구조 속에 있는 계급이 아니라 은사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성직자 위계질서 대신 만인 사제직의 원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관은 루터와 다른 점이 있었다. 교회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루터와 칼빈의 교회관의 차이는 교회제도에 대한 차이를 반영한다. 루터는 교회를 ‘성도의 모임’(communio sactorum)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제도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지 않았다. 즉 루터는 제도화 된 로마 가톨릭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제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교회에는 로마 가톨릭의 감독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²¹⁾

그러나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모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institution)로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의 교회 개념이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개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자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교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칼빈에게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성경은 어떤 형태의 교회정치제도를 지지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또 사도시대의 교회정치제도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였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다.

그러나 칼빈은 신약성경의 두 본문에 근거하여 신약시대 혹은 사도시대에는 비록 장로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장로교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장로교 정치제도를 보여주는 두 가지 근거는 사도행전 15장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결과 이방인과 할례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디옥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에 파송하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회중제도임을 보여주지만, 지역교회가 파송한 교회 대표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오늘의 노회(혹은 총회)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는 장로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21) 김영재, 360.

22) 김영재, 360.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회’(the body of elders)란 ‘장로들의 일단’ 혹은 ‘장로단’이란 말로서 지금의 노회(老會)에 해당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제도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고,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치형태로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의 교회개혁운동을 통해 이 제도를 회복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계급적인 감독제도와 다른 장로교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2) 장로교 정치 제도의 의의

16세기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정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첫째는 국가 혹은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교회건설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와의 정당한 관계의 정립은 개혁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국가 혹은 시의회 등 국가권력 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고, 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치리권(治理權)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의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정치제도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질서와 훈련, 치리를 위해서도 교회정치 제도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규정’(Ecclesiastical Ordinances of Church of Geneva)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다. 이 문서는 장로제도, 혹은 장로교제도에 대한 칼빈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선하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황제-교황주의(Caesar-Papism)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는 에라스티안주의(Erastianism)도 잘못이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세속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고, 성공회는 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했다. 루터교는 국가의 교회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방(領邦)교회로 발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어떤 정치제도가 성경에 가장 부합되는 바른 제도인가에 대해 고심했다.²⁴⁾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로교제도(Presbyterianism)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장로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처리에서 개별 교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어느 한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기구라고 보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

23) 권징에 있어서 특히 출교권(黜教權)의 문제로 칼빈과 시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문제로 제네바 시의회는 1538년 4월 칼빈과 파렐의 추방을 결의하기까지 했다. 취리히의 개혁자인 츠빙글리(Zwingli, 1484-1531)는 출교권이 교회에 있지 않고 정부, 곧 시의회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후계자인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4)도 출교권은 통치자에게 있다고 보아 취리히 교회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권징권은 교회에 속하며, 교회의 고유한 과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부서(Martin Bucer, 1491-1551)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도덕적인 권징(moral discipline)을 교회의 고유한 업무로 간주하였고, 가장 중한 권징인 출교는 정부가 아닌 교회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서는 이미 1527년에 출판한 「마태복음 주석」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감당하려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24) *Inst.*, iv, 1-10.

수 받은 것을 기억하라.”에서 ‘장로의 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제도로 이해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는 비록 ‘장로제’ 혹은 ‘장로정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이미 장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론, 예배론, 성찬론에 있어서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인 마틴 부서(Martin Buce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장로교 정치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부서는 1538년 『참된 목회에 관하여』(*Von der waren Seelsorge*)를 출판했는데, 이것은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창이었다. 칼빈은 이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입었고, 부서가 1536년에 출판했던 『로마서 주석』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2판(1539년 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회중정치는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 형태로서 지역교회의 자율성(곧 목사의 청빙, 예산의 집행, 치리의 자율적 집행 등)과, 교회와 교회 사이, 목사와 목사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며, 어떤 형식의 계층구조도 반대한다. 이들은 교회연합이 계층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 교회연합을 반대하고 개교회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는 회중교회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수용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갖는다. 이것이 회중교회 제도와 다른 점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장로교 정치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 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지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un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권력과 독립하여 교회의 직분자(특히 치리를 하는 직원으로서 목사, 교사, 치리 장로)에 의한 치리, 연합을 통한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개체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은 장로제의 3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웨스트민스터회의(1643-1647)²⁶⁾에서도 교회정치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다른 교리적 문제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교회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무려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 때에도 중요한 이슈는 국가권력과 의 문제였고, 어떤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인가가 관심의 핵이었다. 오랜 토론을 통해 작성된 이 신앙고백서²⁷⁾에서 장로교 제도가 잘

25) 흔히 장로제의 제3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평등성’은 1646년 12월에 발행된 「교회정치의 신적 제정」(*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um*)에서는 언급이 없다. 도리어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맥퍼슨과 미국의 찰스 핫지가 주창했다.

26) 이 회의에는 121명의 영국교회 내의 청교도 목사들이 참석하였는데, 대부분 장로교 사상을 가진 이들이었고, 약간명의 회중교도와 두,세명의 감독교회 지지자들이 있었다. 그 외에도 30여명의 평신도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파송한 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장기국회가 이 회의에 위촉한 것은 영국교회의 ‘39개조’를 개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 작업이 반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 의회와 찰스 1세간의 전쟁에서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의 원군의 힘을 입어 승리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6명의 대표 중 4사람이 잉글랜드 측의 에드워드 레이놀드(Edward Reynold)를 포함한 7명의 신앙고백서 기초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7) 이 신앙고백서는 1647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채택하였고, 미국장로교회는 1729년 대,소요리문답서와 함께 채택하였다. 이 신앙고백서는 회중교회와 침례교회 신앙고백서 작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매서추세츠주 회중교회 노회는 1648년 이 신앙고백서의 교회정치에 관한 사항만 수정하고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일이 있다. 1903년 미국북장로교회가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할 때에 이 신앙고백서의 생활에 관한 3조항을 수정하고, 성령과 선교에 관한 장을 첨가하였다. 교리에 관한 조항은 수정하지 않고 보다 적절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고 제10장 3항, “죽은 유아의 구원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고, 제3장 “예정에 관한

석명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회의는 영국에서의 장로제의 대두와 더불어 의회와 신학자회 간의 대립을 보여주었는데, 그 대립의 핵심 사안은 치리권의 문제였다. 치리권이 의회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가? 이런 대립된 주장의 와중에서 의회가 ‘9개 항목의 질의서’를 신학자 회의에 보냈는데,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1646년 12월 런던의 시온 칼리지(Sion College)의 목사들이란 이름의 익명으로 출판된 문서가 『교회정치의 신적 제정』(*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i*)인데, 이 문서에서 치리권은 위정자나 교회 회중에 있지 않고 교회의 치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정치의 권위 곧 치리권이 “교회의 회중, 곧 신앙의 공동체에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시의 독립파교회가 교회정치의 권위가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결국 장로교 제도란, 1. 국가권위의 한계성을 지적해 주고, 2. 교회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지켜가는 제도이며, 3.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통해 바른 교회를 세워 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3) 칼빈의 직분관과 장로직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을 보내고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귀환한지 약 두 달 후인 1541년 11월 20일 교회규정 혹은 교회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규정’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1542년 1월 2일 시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문서에서 칼빈은 1539년도 판 ‘기독교강요’에서 제안했던 바처럼 신약성경 원리에 따라 4종의 직분을 제안했다. 그것은 목사(Pastors, Pasteurs), 교사(doctors, docteurs), 장로(elders, anciens), 집사(deacons, diacres)였다(엡4:11).²⁸⁾ 칼빈은 신약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상의 네 직분을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들’(Jus Divinum)이라고 보았다.²⁹⁾ 이 4가지 직분에 대한 이해는 마르틴 부서에게서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네 가지 직분에 대해 규정한 바에 따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할 책임을 지니며, ‘교사’는 교리를 순수하게 지킬 것과 자격 있는 목사를 양성하며 신앙교육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장로’는 시민의 생활을 감독하며 그릇된 행동은 사랑으로 징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를 지닌다. 장로는 제네바시의 각 구역에서 선출되며 교회 헌법과 규칙이 잘 이행되는지는 살피며 감독케 하였다.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재무 관리인(procurators)과 병든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병원봉사자(hospitallers)가 집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³⁰⁾ 이렇게 하여 칼빈은 중세 하에서 사라졌던 장로, 집사 직을 회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4종 직분을 통해, 제네바교회 뿐만 아니라 제네바시를 개혁하고 질서와 훈련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칼빈은 국가 혹은 정치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와 긴밀한 관

여” 설명을 부과함으로써 정통주의 시대의 산물인 극단적인 예정론의 입장을 수정하였다. 한국교회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할 때 “12개 신조”를 채택하는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요리문답을 신앙의 지침을 위해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신앙고백서로 채택하는 문제는 후일로 미루었다.

28) Walter Lingle, *Presbyterians: Their History and Belief* (Richardmond: John Knox Press, 1951), 21.

29) *Inst.*,IV.3.5.

30) *Inst.*,IV.3.9.

계 아래 두었고 제네바시를 하나의 교회적 구조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1541년 시민의 입법을 완성하는 일도 위촉 받았으므로 교회와 세속의 법규가 긴밀하게 조립(組立)되어 있었다.

칼빈이 제안한 4종직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장로직은 평신도 중에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 분별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고 보았다.³¹⁾ 장로는 소의회로부터 2명, 60인회로부터 4명, 200인회로부터 6명 등 전체 12명이 선출되어 제네바시 각 구역에 배치되었다. 장로직의 계속 수행여부는 매년 말 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연임되었다. 장로들은 주 일회 모여 목사와 함께 교회 치리를 위해 의논했다.³²⁾

그런데 칼빈은 고린도전서 12:28, 롬12:8, 특히 딤후5:17절에 근거하여 장로의 이중 직제, 곧 가르치는 장로(강도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치리장로)로 구분했다.³³⁾ 디모데후서 5:17절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가 ‘말리스트타’(μάλιστα)인데, 이를 ‘특별히’라고 번역하여 이중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KJV NIV NRSV 공동번역, 표준새번역의 경우이다. 한글 개역개정과 냉서는 이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다. 고신, 합동교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T. C. Skeat는 μάλιστα를 ‘즉’으로 번역하여 ‘잘 가르치는 장로들’이 곧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보아 이중직제를 거부한다.³⁴⁾ 이런 입장을 따른 이들이 Marshall, J. Stott, Campbell 등이다. 이들은 두 종류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잘 다스리는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볼 때 딤후 3:1-13이 이 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치리하는 장로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칼빈은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치리하는 장로, 곧 지금의 장로의 기능은 신자들의 윤리적 삶을 감독하는 직분이었다. 즉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치리를 담당하는데 목사가 가르친 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장로였다. 이런 점에서 화란 개혁교회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심방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목사와 장로는 상호 대립된 역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는 협조자였다.

4) 감독회, 당회(collegium, consistorie)

칼빈은 4종의 직분을 통해 제네바의 질서와 훈련(치리)을 감당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제네바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감독하고 정화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감독회(Consistorium, Consistory)를 구성하였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종교법원’ 혹은 ‘치리법원’이라고도 하고 종무국(宗務局)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³⁵⁾ 감독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네바시의 질서와 훈련을 위한 치리를 담당하는 것(to handle matters of discipline)이었는데, 그 구성은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 곧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이 협의체를 칼빈은 콩시스투아(Consistoire)라고 불렀다.³⁶⁾ 본래 콩시스

31) *Inst.*, IV.3.8.

32) 송인설, “개혁교회 직제의 역사” 『교회직제론』, 181.

33) *Inst.*, IV.3.8, 칼빈, 『디모데전서』 (성서교재간행사, 1981), 504..

34) 이진섭, “치리장로개념은 성경적인가?” 『성경과 교회』 5(2007), 244.

35) 감독회는 The Court of the Church, Ecclesiastical Court, The Court of Presbyters, Consistorial Judges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져 왔다. Lechler, *Geschichte der presbyterial Verfassung*, 32-49.

36) David Hall & Joseph Hal 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투아라는 단어는 중세 때 추기경단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칼빈은 이 용어를 목사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는 치리회, 곧 당회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³⁷⁾ 이것은 현재 장로교회의 ‘당회’이다. 이 당회는 시민(국가)법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에 속한 교회적 치리기관이었다. 말하자면 칼빈은 목사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는 당회를 구성하여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교 정치구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제도 또한 부서가 1538년 『참된 목회학』 (*Von der wahren Seelsorge*)에서 제시한 바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4. 남은 문제들

1) 장로직 이해의 변화

16세기 이후 장로직제는 변화를 겪어왔다. 칼빈 당시의 제네바에서 장로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되는 1년 단위의 임명직이었다. 소의회가 적격자를 지명하고 목사들의 동의 후 200인회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560년의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교회치리서』 (*The first Book of Discipline*)에서는, 장로는 목사에 의해 지명되고 회중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는 1년 임기의 직이었다. 물론 재 선임이 가능했으나 3년을 넘지 못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1578년의 『제2치리서』에서는 장로를 안수하는 종신직으로 규정했다. 이런 조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 스코틀랜드장로교회는 목사 장로를 동등한 직분으로 보고,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일반 장로를 치리하는 장로로 부르기 시작했다.³⁸⁾

웨스트민스터대회에서 작성된 정치모범에서도 장로를 종신직으로 규정했다. 미국장로교회의 헌법에서도 장로는 회중의 선거로 선출되며 목사에 의해 안수 받도록 규정했다. 구라과적 환경 곧 제네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에서 장로는 성도의 삶을 감독하는 직분이었는데,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소개된 이후 장로는 교회 행정 전반을 감독하는 직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장로의 임기에 대해서는 일관된 규정이 없다. 화란교회를 비롯한 개혁파 교회 전통은 임기제를 두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장로교회나 한국은 종신직으로 이해하고 있다.

19세기 미국교회에서는 장로직 이해와 관련하여 큰 논쟁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장로직을 구분하여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와 ‘치리하는 장로’(ruling elder)로 구분하는 ‘두 장로직’ 이론이다. 물론 이런 구분은 칼빈에 이어 1578년의 『제2치리서』에서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남장로교의 소론웰(James H. Thornwell, 1812-1862)과 북장로교의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 사이의 격한 논쟁으로 발전했다. 소론웰은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직분으로 보아 동등성을 주장했으나 핫지는 장로는 평신도 대표로 보아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직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 비추어 토론하고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2) 더 논의해야 할 과제들

그렇다면 우리는 장로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교회에서 장로직은 민감한 현안이 되었다. 이안 머리(Iain H. Murray)가 제시했듯이 장로직에 대하여 3가지 다른 견해가 있

Church of Government (Eerdmans, 1994), 147-8.

37) 오토 웨버(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이레서원, 2001), 28-29.

38) 송인설, 195.

다. 첫째, 장로의 직은 하나이나 그 기능은 두 가지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신약의 장로직은 하나이지만 그 직무는 두 종류로 나뉜다는 주장인데,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딤편5:17절에 근거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빈약하다. 둘째, 장로의 직 자체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장로직 자체는 동일한데, 기능만 구분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주장과는 달리 장로직 자체가 둘로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은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만이 장로이고, 사역자들이 아닌 지금의 일반 장로들에게는 장로(elder)라는 칭호를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셋째, 장로직도 하나이고 그 기능도 하나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장로직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 관점과 동일하지만 그 기능이 구분된다는 관점은 다르지 않는다. 이 제3의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든 장로들은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Thomas Withevow이다. 이 제3의 입장은 반성직주의적(anti clerical)인 성격이 있다.

그렇다면 목양장로(牧羊長老) 제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로직, 혹은 장로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점도 우리가 토론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상규 교수님의 발제에 관한 논평

윤 은 수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상규 교수님의 발제에 관하여 감히 논평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당한 시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정치(권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권징을 교회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방어에 실패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권징을 교회의 3대 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에는 당연히 교회의 직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칼빈도 제네바에서 제네바교회 규정서들을 통하여 교회의 직제를 정하고 올바른 교회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적어도 칼빈에게는 교회정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유지하고 지키는 수단으로 교회정치를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장로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정치, 좁게는 교회의 직제에 관한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장로교회가 직면한 어려움들은 결국 교회정치와 직제의 잘못된 이해와 오해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장로교회가 직면한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교수님의 장로직제의 발제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직제의 이분법논리에서 삼분법논리로의 전개가 문제가 되어 중세 암흑기를 이루게 되었으며,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중세교회의 잔재들이 있어 교회가 계급화가 되고, 교권주의에 사로잡히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한국장로교회의 현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규 교수님은 현재의 장로직제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장로의 경우에 감독제와 같은 권위의 발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장로제도가 잘못 오용이 되면 감독제와 같은 권위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장로의 경우에는 화란개혁과 교회를 예로 들어 심방의 사명을 지적하셨습니다. 칼빈의 장로직제는 교수님의 지적대로 결국 구역에 속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장로법원을 통하여 권징을 행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처리하는 장로의 경우에 당회를 통한 감독의 임무에는 충실하나 교인들을 힘써 돌아보며 권면하는 심방의 임무에는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섬기는 자가 아닌 권위 하는 자로만 머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해 봅니다.

교수님의 좋은 발제를 대하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듣는 우리들에게 좀 더 덧붙이는 설명이 있으면 부족한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이 정치하는 교회로서의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해석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장로제도의 권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를 권위주의로 몰고 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들에 의해 민주적 협의과정으로 대의정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설명을 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와 처리하는 장로인 평신도 장로의 구분과 이해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장로나 치리하는 장로가 같은 맥락에서의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르치는 장로를 목회자로, 치리하는 장로를 평신도로 구분을 한다면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장로교회는 사실상 그 동안 이 부분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권이나 축도권이나 성례권에서조차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¹⁾ 자칫 이러한 명확치 않은 구분은 교수님이 마지막에 밝히신 것처럼 반성직주의(anti clerical)로 흐를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회자와 평신도들 가운데 세움 받은 장로들로 구분을 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²⁾

볼링거가 작성한 제2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제18장: 교회의 교역자들, 이들의 제정 및 이들의 의무에 관하여’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교역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서 “‘만인제사장직’과 ‘교역자직’은 서로 크게 다르다”고 평함으로써 평신도와 목회자의 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교황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거시켰다고 해서 교회의 교역자직을 폐지시킨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교역자들의 영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장로교회에서 당회의 직제 간에 일어나는 잦은 충돌이 결국 직제의 정체성에 관한 불명확한 이해와 오해로 인한 것도 있음을 인정하고 교리사적인 관점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장로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로의 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장로의 임기에 관한 일관된 규정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로 교회의 근본 취지인 대의정치의 정신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의정치는 임기가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³⁾ 장로교회 정치체도가 대의정치에 입각한다면 목사나 장로는 목회를 하거나 당회의 일을 수행할 때에 그 직이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원로장로나 원로목사의 제도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한국장로교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장로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한국교회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논의에 붙이신 목양장로도 그와 유사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양장로는 최근에 몇몇 교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⁵⁾ 부산시 강서구 명지에 소재한 호산나교회의 경우에는 장로피택 전에 목양장로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하고 목양에만 전무하는 시무목양장로를 선택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고 합니다. 앞서 장로의 역할을 교인들

1) 미국장로교회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목회자 부채시 설교나 성찬을 허락하기도 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U.S.A). Part II. *Book of Order* 2007-2009, G-6.0304.

2) 칼빈은 기독교강요 최종판 4권 3장 6절에서 목사를 사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목사의 직무로 경건을 설교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으로 말한다. 장로를 설명하면서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는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감독들과 더불어 과실을 책벌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onh. Calvin,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3. 6. tr.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3) 황규학,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서울: 예클레시안, 2007), 230.

4) 장로의 임기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장로의 감독권과 시찰권을 충실히 수행하자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제 없이 종신제를 할 경우에는 장로는 사회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장로의 임기제 없이도 무리가 없는 것은 장로의 감독권에는 충실하나 시찰권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 부산 강서구 명지에 소재한 호산나교회에서는 장로를 시무행정장로와 시무목양장로로 구분을 하고 있다. 최홍준, “목양장로사역으로 목회의 디딤돌을 세운다” 목회와 신학 09년 11월호 (2009): 62-63.

을 살피고 감독하는 직책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시무목양장로는 장로제도의 변칙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제의 첨가는 개혁교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풍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끝으로 장로교 정치의 맹점은 치리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 전체, 교단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엽에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신사참배가결로 말미암은 한국장로교회의 위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제도보다 장로교회제도는 좋은 일꾼의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선임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치리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발제가 한국장로교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최근 한국장로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직제간의 충돌과 갈등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좋은 교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